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15조(권한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<신설 2024. 12. 17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.<개정 2024. 12. 17.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20. 12. 31., 2024. 12. 17.>

1.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

2. 과적(過積) 운행, 과로 운전,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 · 계몽

3.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<개정 2011. 12. 13., 2013. 3. 23., 2013. 6. 11., 2018. 7. 3., 2019. 6. 25., 2020. 6. 16., 2024. 12. 17., 2025. 10. 28.>

1.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· 운영

2.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

2의2.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
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· 관리 및 교육
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

4의2.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

5.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 · 관리

6.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

7.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 · 관리 자료의 요청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.

<신설 2019. 6. 25., 2024. 12. 17., 2025. 10. 28.>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1. 12. 13., 2013. 3. 23., 2024. 12. 17.>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[시행일: 2026. 1. 1.] 제15조

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 · 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법 제47조의2제4항,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· 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,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 및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6. 11., 2014. 11. 28., 2015. 12. 22., 2017. 3. 27., 2019. 6. 25., 2020. 6. 16.>

1.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

1의2. 법 제5조의7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

2.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